

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398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22. 2. 11.

제안자 : 김은영 의원

1. 수정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하남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명시하고, 재·보궐 선거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조문을 신설함

2. 주요골자

- 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 이내로 함 (안 제6조)
- 재·보궐 선거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조문을 신설함 (안 제14조)

3. 수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
으”를 “15명 이내”로 한다.

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,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(재·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) ① 「공직선거법」 제14조제
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과 같은
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·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
되는 시장은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·운영
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.

『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』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<p>제6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<u>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</u>으로 구성하며,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6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15명 이내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4조(재·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) ① 「공직선거법」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과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·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은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.</u></p>
<p><u>제14조</u> (생략)</p>	<p><u>제15조</u> (현행 제14조와 같음)</p>